형사소송법

- 문 1.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다.
 - ②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3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형벌권보다 개인의 인권옹호에 우위를 두라는 취지이다.
 - ③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,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.
 - ④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「형사소송법」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합치하는 법률규정이다.
- 문 2.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 - ㄱ. 법관의 경질
- ㄴ. 병합심리신청
- ㄷ. 재심청구의 경합
- ㄹ. 간이공판절차의 취소
- ㅁ. 위헌법률심판의 제청
- H. 공판절차개시 후 새로운 배심원의 참여
- ① 기, ㄴ, ㄹ
- ② L, E, D
- ③ □, 글, □
- ④ ⊏, □, н
- 문 3. 소송행위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라도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친고죄의 공소 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된다.
 - ② 비친고적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적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.
 - ③ 성명모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특정이 잘못되었거나 범행의일시·장소 등의 기재에 사소한 오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보정이 허용되다.
 - ④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 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,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·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.

- 문 4.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
 - ②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일시만 달리하는 사안에서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.
 - ③ 甲이 乙의 기념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乙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, 양 죄는 죄질 및 피해법익을 달리하므로 전자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후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- ④ 甲이 乙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종전 적용법조에「형법」제30조를 추가하여 乙과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경우,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.
- 문 5.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 절차이지만, 국민 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.
 - ② 검사, 피고인,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 - ③ 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공판 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④ 공판준비기일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,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다.
- 문 6.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기.「형법」제310조의 "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"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
 - 다.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, 음주시각,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
 - 다.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
 - 리.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정액의 인정 등몰수·추정 사유의 입증
 - ① ⊓, ∟

② ¬, ⊒

- ③ ㄴ, ㄷ
- ④ ⊏, ⊒

- 문 7.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피고인 甲이 위조신분증을 제시·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,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
 - ② 피고인 Z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,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
 - ③ 피고인 丙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때에, 그 범행 시점에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남편의 진술조서가 제출된 경우
 - ④ 피고인 丁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, 피고인 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

문 8.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그. 피의자에 대한 보석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는 것이라는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절차와 동일하다.
- 니.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 하에 공판정에서의검사의 공소장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.
- 다.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상소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.
- 리.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,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즉시항고에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.
- ① 7. ∟
- ② 7, ⊏
- ③ ∟, ≥
- ④ ⊏, ≥
- 문 9. 유죄판결의 이유를 설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, 장소,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할 필요는 없고,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.
 - ②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때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,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 부분을 표시하면 된다.
 -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,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 하여야 한다.
 - ④ 자수가 임의적 감경사유인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유에서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.

- 문 10.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,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.
 - ②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,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여야 한다.
 - ③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,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이다.
 - ④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,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
- 문 11.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합)
 - ① 「형사소송법」에 대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소송행위의 대리는 허용된다.
 - ②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.
 - ③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, 변호인의 선임,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.
 - ④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, 그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.
- 문 12.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합의부는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 - ②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,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.
 - ③ 피고인의 현재지이면 범죄지,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.
 - ④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, 치료감호사건과 피고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.

- 문 13.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ㄱ.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경우
 - 그. 경찰관이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무전 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용의자를 수색하다가 약 10분 후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 km 떨어진 곳에서 운전석 앞범퍼가 훼손된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검문한 후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
 - 다.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
 다음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
 甲에게 그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
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,
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
 - 근.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甲이 乙의 범의를 유발하여 범행하게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자, 수사기관이이를 근거로 乙을 체포한 경우
 - 고. 경찰관이 행위의 가벌성, 범죄의 현행성·시간적 접착성,
 범인·범죄의 명백성은 인정되지만 도망 또는 증거
 인멸의 염려가 없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
 - ① ㄱ, ㄴ, ㄹ
 - ② 7, 5, 5
 - ③ ∟, ⊏, □
 - ④ ∟, 글, □
- 문 14.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중 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공개주의는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이 공소제기의 여부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.
 - ② 공개주의란 모든 국민이 참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, 특정인에 대하여 퇴정을 명할 수도 있다.
 - ③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.
 - ④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안에서 녹화, 촬영,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

- 문 15.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도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고, 법원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툼 수 없다.
 -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, 법원이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.
 - ③ 피고인의 직접적 범죄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.
 - ④ 피고인의 특정을 위한 경우라도 상습범이나 누범요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전과 등 범죄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.
- 문 16.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그.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.
 - 나. 법원의 증거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.
 - C.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,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.
 - 리.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, 항고는 허용된다.
 -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이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지만,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.
 - ① 7. ㄴ
 - ② L, C
 - ③ □. □
 - ④ ≥, □
- 문 17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(alibi)를 주장한 경우, 이에 대한 거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.
 - ②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된 경우라도 아직 증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차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 - ③ 최종변론시에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.
 - ④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·무효인 경우,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.

- 문 18.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고,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1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.
 - ②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,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.
 - ③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「상호저축은행법」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,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.
 -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,업무상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배임증재의 범죄사실에도 미친다.
- 문 19.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 - ① 수개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,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,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위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.
 - ② 「형법」제37조 전단의 경합범(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)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유죄, 일부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, 대법원은 무죄부분만 파기하면된다.
 - ③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,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.
 - ④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,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문 20. 다음 중 ① ~ ②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는 것(○)과 없는 것(×)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甲의 행동으로 보아 마약을 투약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甲을 영장 없이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였다. 연행된 甲은 경찰서에서 채뇨를 위한 '소변채취동의서'에 서명하고 그 소변을 제출하였는데,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①소변검사시인서에 서명하였고, 경찰관은 이를 근거로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. 이후 경찰관은 甲에 대한 압수・수색영장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⑥ 감정서를 회보받았다.
- 경찰관이 절도현장에 떨어진 매출전표를 근거로 금융 회사로부터 거래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수사기관 명의의 공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로부터 ⓒ <u>Z의 인적사항 등 정보</u>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, Z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다. Z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절도범행에 대하여 임의로 자백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. Z은 석방된 지 5일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로 제2의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. 이에 경찰관은 제2의 절도범행의 피해자로 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② 진술서를 제출받았다.

	<u> </u>	<u>(L)</u>		<u></u>
1	×	0	×	0
2	×	0	0	×
3	0	×	0	0
(1)	\circ	\circ	×	\circ